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**대한병원협회**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

1. 관련근거 : 대통령령 제26356호 (2015.6.30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, 2종 수급권자 중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경감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령하여 안내합니다.

붙임 :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문 1부.

[별표 1]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1부.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(www.kha.or.kr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 끝.

대한병원협회 장



수신처

전국병원장

사원 김영진 팀장 노환우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281 (2015.07.01)

우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8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jkim@kha.or.kr